

제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12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19.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소1168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9. 7.경부터 제주시에
‘C’라는 상호의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9. 8.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이라 한다).

주류거래약정

제1조 원고는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아래의 상당하는 물품 및 물량을 지원하거나 약정금액
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조정하여 지원한다.

제2조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주류만 취급판매하여야 하며,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약정금
을 일시불로 전액상환하여 타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약정금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단 원고가 양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주류공급 단가는 일반적인 가격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격조정을 약정기간에는 할 수 없으며 당일주
류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미결제시 원고가 임의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주류거래 약정기간은 최종지원일로부터 3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종료 전 쌍방이
합의하여 약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약정기간
동안 원고에게 추가로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피고는 갑이 제공하는 주류를 제3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본 약정은
자동해약되고 피고는 기자재 및 지원품에 대하여 즉시 현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6조 피고는 주류거래 약정서 작성 후 거래계약파기시 위 지원사항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하고 외상 채무금은 거래중단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법정이자율

가산하여 변제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품목

순번	품목	금액	확인
	간판	삼백만원	
단, 1년평균매출(월매출) 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품목 % 회수한다 위와 같이 본 거래약정과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조회에 동의하며 대여품목을 확인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에 따라 2019. 7.경 간판제작업자 D에게 이 사건 업소에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부착하게 하고, 2019. 8. 29. D에게 간판제작비용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18.경 피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와 원고가 2019. 7. 9.부터 주류거래 중 2020. 1. 14. 이후로 거래유지가 되지 않아 거래시 발생한 간판지원금 3,000,000원을 수차례 걸쳐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2020. 8. 17.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020. 8. 23.까지 이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4조에 따른 주류거래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이 사건 주류거래 약정을 파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6조에 따른 위약금으로 간판지원금의 2배인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업소가 입점한 호텔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업소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간판은 원고 소유이고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다. 이 사건 간판은 현재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사용 중인바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위반 여부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4조에 의하면, 약정기간은 최종지원일로부터 36개월이다(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체결일인 2019. 8.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정기간은 2022. 8. 1.까지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4조에서 정한 3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0. 1. 14.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에 따른 주류거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업소가 입점한 호텔의 영업 중단으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주류거래 중단에 대해서 원고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사유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바, ‘호텔운영과 별개로 이 사건 업소를 피고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4조 위반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위약금 배상의무 여부

가)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6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서의 작성 후 거래계약파기 시 지원사항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거나 주류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피고는 36개월 동안 피고에게서만

주류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피고가 영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받기만 하고 주류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거래계약파기로 봄이 타당한바¹⁾,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4조를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6조에 따라 지원사항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을 지원한 것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하단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품목’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에는 위 문장을 제외하고는 ‘대여’라는 기재가 없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1조에서는 ‘아래의 상당하는 물품 및 물량을 지원하거나’라고 기재하여 약정서 하단에 기재된 것이 원고가 지원한 물품임을 명시한 점, ③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5조,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하단에도 ‘지원품’, ‘지원품목’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간판은 피고가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면서 피고가 정한 상호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별다른 효용이나 가치가 없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의 소유자인 원고가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업소가 있던 곳에 계속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에 따라 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간판을 지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제6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건 간판 상당액 3,000,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6,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가원, 판사 이선희

1)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에 최소 거래금액 등이 정해진 바는 없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간판을 지원받고 약 6개월 정도 주류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주류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